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안 번호	3460
----------	------

2026년 2월 26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아이수루 의원 외 16명
- 나. 제안일 : 2026년 2월 9일
- 다. 회부일 : 2025년 2월 12일
- 라. 상정일 :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6년 2월 26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아이수루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시 외국인주민은 40만 명 이상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포용적 행정체제 구축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나, 기존 센터 운영이 구마다 상이하여, 인력·예산 차이로 서비스 품질 격차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센터 운영 기준을 명문화하여 서비스 품질 균형을 확보하고, 공무

원의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이에,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운영 기준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 의무화 조항 신설을 통해, 외국인주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운영 등의 관리 지원 및 보수교육 조항 신설 (안 제18조)
- 나. 공무원의 교육에 관한 조항 신설함 (안 제2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지원토록 하고(안 제18조제4항) 지원시설 인력의 자질과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8조제5항)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안 제22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 ③ (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시장은 지원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지원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 지원하여야 한다.</p> <p>⑤ 시장은 지원시설에 두는 인력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제22조(공무원의 교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p>
<p>제22조 ~ 제25조 (생략)</p>	<p>제23조 ~ 제26조 (현행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와 같음)</p>

“개정안 검토”

1) 지원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지원 근거 신설 (안 제18조제4항)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제4항은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관리·지원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 ③ (생략) <신설>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지원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지원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 지원하여야 한다.

- 현행 조례 제18조¹⁾는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의 설치 및 인력의 파견, 민간 위탁 근거 등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글로벌센터 1개소, 외국인주민센터 7개소, 글로벌빌리지센터 7개소, 서울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1개소 등 총 16개소의 지원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음(붙임1)

- ‘2025 다문화 사회 공동체 형성 및 포용사회로의 통합 연구’²⁾에 따르면

- 1)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법인·단체의 직원을 지원시설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기관에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이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2) 유라시아정책연구원, 다문화 사회 공동체 형성 및 포용사회로의 통합 연구, 2025.11.24.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용역), p.161~162. (일부내용 발췌)
- 현재 서울시에는 서울외국인주민센터, 글로벌빌리지센터(7개소), 외국인주민센터(6개소),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서울글로벌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 센터들은 3년 단위로 서울시와 계약을 맺어서 민간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원시설은 민간 위탁 근거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운영기준이나 규모에 대해 명확한 관련 규정이 없고 민간위탁 기관과 3년 단위로 재계약 또는 신규 계약하며 예산 편성에 따라 운영 규모가 결정되는 구조로 인해 지원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시설의 운영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2) 지원시설 종사자 및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근거 마련 (안 제18조제5항, 제22조)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제5항은 지원시설에 종사자하는 인력의 자질과 능력 향상을 위해 관련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2조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 ③ (생략) <신 설> <신 설>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지원시설에 두는 인력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공무원의 교육) 시장은 외국인

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의 재정과 때에 따라서 장소를 제공하고 운영은 민간위탁단체가 책임지는 방식이다. 3년이 지나면 평가 이후 재계약 혹은 공개입찰을 통해 담당기관이 정해진다. 그러다보니 장기적인 사업을 하기가 어렵고 동 기관 종사자들은 경력 인정을 보장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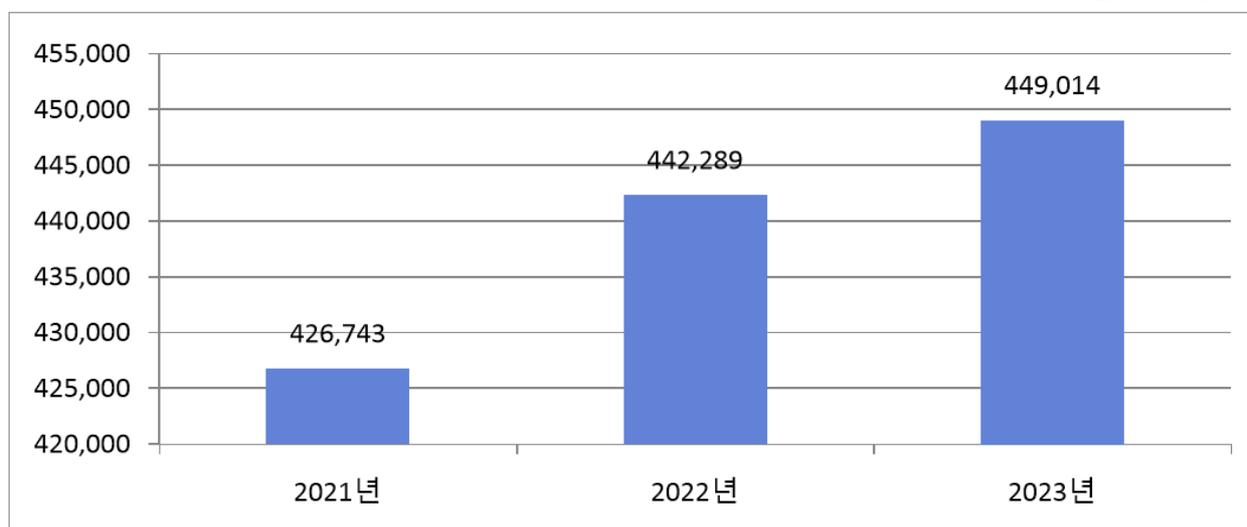
- 현재 서울시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에는 18조에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법인이나 단체, 기관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운영 및 그 규모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서 조례를 통해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p>제22조 ~ 제25조 (생략)</p>	<p><u>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u></p> <p>제23조 ~ 제26조 (현행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와 같음)</p>
-------------------------	--

- 서울시 외국인주민 수는 2021년 426,743명, 2022년 442,289명, 2023년 449,014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³⁾하고 있으며 서울글로벌센터, 글로벌빌리지센터,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외국인주민센터 등 지원시설별 운영 특성이 상이함에 따라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 연도별 외국인주민 수 (2021년~2023년) 〉

단위 : 명



출처 : 행정안전부

3) 행정안전부, 202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2022.11월, 2023.11월, 2024.10월 발표)

- 관련 연구⁴⁾에 따르면 지원기관 종사자의 경우 상담, 다문화 이해, 법률·노무 등 다양한 업무 수행을 위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나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관련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제고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
- 다만, 보수교육 및 공무원 교육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교육 운영계획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해당 조문이 사문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부 교육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4) 유라시아정책연구원, 다문화 사회 공동체 형성 및 포용사회로의 통합 연구, 2025.11.24.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용역), p.159, p.165

다. 종합 의견

- 이번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종사자 및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증가하는 외국인주민 행정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지원정책의 공공성과 지속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제4항은 외국인 주민 지원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관리·지원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기관과 3년 단위로 재계약 또는 신규 계약하며 예산 편성에 따라 운영 규모가 결정되는 구조로 인해 지원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시설의 운영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는바 그 필요성이 인정됨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제5항은 지원시설 종사자의 자질과 능력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담·다문화 이해·법률·노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 수행 역량을 제고하여 정책 집행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할 것임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22조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추진 연속성 확보와 지원시설 운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할 것임
- 다만, 보수교육 및 공무원 교육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구체적인 교육 운영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 해당 조문이 사문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부 교육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임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6. 토론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 현황 (26.1월)

	센터명	주소	운영방식
1	서울글로벌센터 (1)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4, 5층	민간위탁
2	글로벌 빌리지센터 (7)	강남 강남구 역삼로7길 16 (역삼동) (역삼1문화센터) 5층	자치구
3		금천 금천구 가산로 116 (가산동) 효연빌딩 3층	자치구
4		서래 서초구 서래로 28 (반포동) 3층	자치구
5		성북 성북구 성북로 134 (성북동)	자치구
6		연남 마포구 동교동 198-31 수성빌딩 3층	자치구
7		이촌 용산구 이촌동 300-27 한강쇼핑센터 3층 304호	자치구
8		이태원 용산구 이태원로27가길 54-14 (이태원동) 지하 1층	자치구
9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 센터 (1)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16 SK리더스뷰 B동 501호	민간위탁
10	외국인 주민센터 (7)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40(대림3동 604-30)	민간위탁
11		강동 (현) 강동구 성내동 508-1, 1층 (2.1.~)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84-10 외 2필지 샬롬빌딩 5층	민간위탁
12		금천 금천구 가산동 144-3 가산동복합청사 3층	민간위탁
13		동부 성동구 무학로6길 47-1 (흥익동)	민간위탁
14		성북 성북구 종암로 129 (종암동) 302호	민간위탁
15		양천 양천구 목동동로12길 59 3층	민간위탁
16		은평 은평구 은평로21길 14-26 (녹번동) 3층	민간위탁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이수루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460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2월 09일
발 의 자: 아이수루 의원(1명)
찬 성 자: 김기덕, 김길영, 김성준,
김원태, 김인제, 민병주,
박강산, 박수빈, 박승진,
박철성, 봉양순, 송도호,
유정희, 임종국, 정준호,
최재란 의원(16명)

1. 제안이유

- 서울시 외국인주민은 40만 명 이상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포용적 행정체계 구축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나, 기존 센터 운영이 구마다 상이하며, 인력·예산 차이로 서비스 품질 격차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센터 운영 기준을 명문화하여 서비스 품질 균형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이에,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운영 기준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 의무화 조항 신설을 통해, 외국인주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운영 등의 관리 지원 및 보수교육 조항 신설 (안 제18조)
- 나. 공무원의 교육에 관한 조항 신설함 (안 제2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지원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지원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 지원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원시설에 두는 인력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하고,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공무원의 교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 ③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시장은 지원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지원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 지원하여야 한다.</p> <p>⑤ 시장은 지원시설에 두는 인력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제22조(공무원의 교육) 시장은 <u>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u></p>
<p><u>제22조 ~ 제25조</u> (생략)</p>	<p><u>제23조 ~ 제26조</u> (현행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와 같음)</p>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관리·지원하여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 지원시설 운영에 대한 시장의 관리·지원 의무는 해당 조항으로 추가적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는 사항이며,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과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현재 관련부서에서 운영 중¹⁾인 것으로 확인되어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권 봉 수

☎ 02-2180-7953

e-mail : shibedoge06@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종사자 교육_상당기초교육(다문화 이해와 고객서비스 기본매너 등)(서남권글로벌센터), 내부직원 등을 위한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문화다양성 전문강사 양성,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교육 등)(서울특별시 다문화담당관)